#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金炳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69

발의연월일: 2020. 1. 5.

발 의 자: 金炳旭・강민국・곽상도

권명호 • 권은희 • 김도읍

김승수 · 김 응 · 김은혜

김정재 · 김태호 · 김태흠

류성걸 • 박완수 • 배준영

송언석 • 양금희 • 유의동

윤두현 · 윤희숙 · 이명수

이 영ㆍ이 용ㆍ이종배

이종성 · 정운천 · 정진석

정찬민 • 주호영 • 최춘식

추경호 · 하태경 · 허은아

황보승희 의원(3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아동학대 신고 수는 2016년 1만 6716건에서 2019년 4만 1389건으로 증가했고, 지난 10년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인원 213명 중 가해자의 80%가 부모로 많은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학대에 노출되어 있음.

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여도 가해현장 내부로 진입하는 것은 제약이 있음. 이는 학대 현장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를 지연시키는 요소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.

이에 사법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피해가 확인되거나 학대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 등에 출입할 수있도록 하는 한편, 이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12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·건물·배 또는 차에 출입할수 있다.
- ⑧ 제7항에 따른 출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·건물·배 또는 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아동학대행위자의부담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12조(피해아동 등에 대한	승급	제12조(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
조치) ① ~ ⑥ (생 략)		조치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	⑦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
		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1호 또
		는 제2호의 조치를 위하여 다
		른 사람의 토지・건물・배 또
		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.
<u>&lt;신 설&gt;</u>		⑧ 제7항에 따른 출입으로 인
		<u>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·건물</u>
		・배 또는 차에 손해가 발생한
		경우라도 해당 사법경찰관리
		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
		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
		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형사책
		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
		다.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원
		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
		또는 일부는 아동학대행위자의
		부담으로 한다.